#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47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05.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21.

https://www.furato.co.kr furato@seokchan.com



# 후라토식당 정보공개서

(주)석찬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석찬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 이수파이브 13층

전화번호: 02-597-7090 팩스번호: 02-597-709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후라토식당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 이수파이브 13층				브 13층
(ㅈ)서ᆉ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석찬 	2018.8.30.		2018.9.5.	채동찬	02	02-597-7090 02-597-	
	법인등록번호 110112		1-6857746	사업자등록번	호	287-8	31-01226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케도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 이수파이브 13층			
대표이사	채동찬/   (주)석찬	후라토식당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十/年代		채동찬	02-597-7090	02-597-709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고 기 등 /		서울시 서초-	구 서초대로 2 이수	누파이브 13층	
이사	정석휘/ (주)석찬	후라토식당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一十八百包		채동찬	02-597-7090	02-597-7091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후라토식당'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후라토식당	
상 호	후라토식당 00점	
상표(서비스표)	<b>多かりった。</b>	출원번호 제 40-2018-0182003 호 등록번호 제 40-1535457 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 <del>총</del> 계 <sup>②</sup>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220,246	672,563	547,683	4,710,570	411,674	425,740
2022년	1,892,317	905,129	987,187	7,815,137	561,209	545,060
2023년	2,610,827	1,498,538	1,112,290	11,404,163	278,009	180,102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74 A H	01 P	-1 T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채동찬	대표이사	2024.04.01.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임원	정석휘	이사	2024.04.01. ~ 현재	이사	회사업무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민경	감사	2024.04.01. ~ 현재	감사	회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면구(경 <i>)</i>	
2023년 12월 31일	1		48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 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sup>©</sup>	사업내용 <sup>②</sup>
가맹본부	홍콩익스프 레스	가맹사업 경영	2021.11. ~ 2024. 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홍콩익스프레스(등록번호:20 213736)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b>&amp;</b> 3.300 €	<b>みっと</b> 43류 2018.12.		출원 제 40-2018-0182003 호	(주)석찬	존속기간
호락된 식상	4011	2019.10.23 등록	등록 제 40-1535457 호	(대) 국선	만료일까지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후라토식당 가맹사업 현황

1. **후라토식당을 시작한 날**: **2019.06.01**.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06.28)

# 2. 후라토식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석찬	후라토식당	채동찬	2019.06.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 이수파이브 13층

### 3. 후라토식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후라토식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우덕도걱정 	일식	규카츠, 오므라이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후라토식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5. 바로 전 3년간 후라토식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sup>①</sup>	계약 해지 <sup>②</sup>	명의 변경 <sup>③</sup>	연말
2021	7	7	_	_	_	14
2022	14	5	_	_	1	18
2023	18	9			1	27

6. 후라토식당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사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부가세(10%)를 제외한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2023년 전체 매장들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영업을 개시한 9개 가맹점 중 3개의 가맹점(범계점,이수점,서울역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였으며, 영업을 개시한 달 중 영업일수 부족으로 매출이 적게 발생한 첫 달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8. [후라토식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후라토식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①</sup>	평균 영업기간 <sup>©</sup>
2023	27	752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사당역지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사당동)	02-3472-806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석찬"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후라토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과 동 시에 예치	하기 1-1) 참조	가맹점 모집 및 개점 지원비로 비용 소모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 시에 예치	하기 1-1) 참조	개점 전 교육비 로 비용 소모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1-1) 최초 가맹금의 반환 조건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4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 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써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 시 가맹비는 다음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단, 개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최초가맹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최초가맹금의 5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과 동 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보증보험 대체 가능)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21,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보증보험 대체 가능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귀하가 그 밖에 지급 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	91,520	4,160			72.6㎡ (약22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55,660	2,53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공사 전 귀책사유 없는 계약취소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주방설비/집기	가맹본부	25,410	1,155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입고 전 귀책사유 없는 계약취소	
의탁자 등	가맹본부	3,850		입고 5일 전	입고 전 귀책사유 없는 계약취소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 귀책사유 없는
POS 시스템	가맹본부	1,650		입고 3일 전	입고 전 귀책사유 없는 계약취소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홍보 인쇄물	가맹본부	4,950		입고 3일 전	입고 전 귀책사유 없는 계약취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가맹점사업자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

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로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설계의 대가로 3.3㎡당 금칠만칠천원(\(\pi\)77,000/3.3㎡, 부가세포함)과 감리대가로 3.3㎡당 금사십사만원(\(\pi\)440,000/부가세포함)을 공사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위의 비용은 면제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철거, 정화조, 전기증설, 냉난방공조공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소방공사 및 신고, 간판, 벽화, 음향, 화장실공사, 몰딩도어공사, 닥트공조공사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개점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알려드립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여부	선정 기준
71nH àln171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가맹 희망자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의 입지 도출 → 입지 선정 조언 → 가맹희망자 의 최종 결정

- \* 점포 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 입지 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후라토식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 영업 개시 이전에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계속가맹금	가맹본부	월 매출의 3.3%	매월 10일	반환 안 됨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 됨	소멸성 비용	비용의 90%를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
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 됨	소멸성 비용	균등 부담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자 부담 원칙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외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 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유니폼, 조리도구 등)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매장운영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여부, 보관		
전반감독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 ▶ 당사는 귀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귀하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귀하는 당사가 점포 점검을 위해 당사의 직원이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비품 등을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영업장소에 비치된 전산장치도 포함합니다.
-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의 점포 점검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직원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갱신 혹은 재계약 이후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 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후라토식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양도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원상회복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 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철거,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

- 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 귀하는 당사와 당사의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종 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가 계약종료 이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당사는 당사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 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사용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본조에서 규정한 계약 종료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후라토식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후라토식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วไวปังไะปัยไษ่ ⊐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판매 및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로부터	무상지원 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 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임귀	가맹본부	계열회사	
규카츠 등 일식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종	후라토식당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대 급 ② 6 3 4 9 9	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2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임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우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라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 하여 '후라토식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 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후라토식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6%	2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후라토식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day) D-180 ~ D-90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후라토식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36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 1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조 1항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37조 3항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3/至 3%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37조 5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2항
<ul> <li>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li> <li>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li> <li>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3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는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 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후라토식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후라토식당]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판에 굽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후라토식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30 ~ 22:00	주 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 ▶ 당사는 귀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귀하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귀하는 당사가 점포 점검을 위해 당사의 직원이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비품 등을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영업장소에 비치된 전산장치도 포함합니다.
-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의 점포 점검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직원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후라토식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一个正	청꾸 경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4177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10%	광고비 9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선세 행시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제시(명세서)	(전국 영지) (50%이상 동의시 적용)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n	"
	팜플렛 등 제작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u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 일 이내 부담액 송금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 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후라토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법 및 경영노하우와 공급처 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가족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 및 기타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는 자도 동일 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계약서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필수품목의 매입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매입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계약서 제39조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하며,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및 당사의 승인 없이 사업자명의를 귀하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금이천만원(₩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조문에 규정된 귀하의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0p~1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_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 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なっちにもつい	기메버버 버트	-)메버버 H-L		ul O H r l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o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o점포의 확장 또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ㅇ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	용	는 이전을 수반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일로부터 3년 이
리어 등의	에테어 광비	하지 않는 점포	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90일	내에 가맹본부
노후화가 객	용(장비·집기의	환경附 :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의 책임없는사
관적으로 인정	교체비용을 제	20%	시업자에게 지급	유로계약이 종료
되는경우	외한 실내건축	o점포의 확장 또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계약의 해자영
o위생이나 안	공사에 소요되는	는 이전을 수반	간 별도의 합마가 있는 경우 1년의	양도 포함은
전의 결함으	<u> 알레</u> 바용 단,	하는 점포환	범위내에서 분화급기능	경우 가맹본
로 인하여	가 맹 사 업 의	경개선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부 부담액 중
가맹업의 통	통일성과 무관하	40%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잔여기간에 비
일성을 유하	게 가맹점사업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례하는 부담액
기 어렵거나	자가 추가 공사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은 지급하지 아
정상적인 영	를실시험에따라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나하거나 이미
업에 현저	소요되는 비용		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지급한 경우에
한 지장을	은 제외)		<분화 급시 절차>	는 환수 가능
주는 경우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있는서류첨뷔 → 3차에	
			걸쳐기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	
			그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 , , , , = = , ,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후라토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물류시스템 이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수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후라토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5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교육 내용에 따름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상수직영점	서울 마포구 독막로 15길 3-14
2	서울	여의도직영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3층
3	서울	잠실직영점	서울 송파구 잠실로 209 kt송파타워 B105호
4	서울	상암직영점	서울 마포 월드컵북로 54길 25 B107호
5	서울	반포직영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경부영동선 본관 1층 점포 15호

[ 상기 직영점 중 상수직영점점, 여의도직영점, 잠실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가맹본부 (1668-220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권장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권장품목은 당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01월 20일 기준, 변동시 별도 공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필수품목은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개연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